

2023학년도

교육활동 보호(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3. 03

관인고등학교

I.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1. 교육활동 보호의 목적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이라 함)은 교육활동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교사의 교육활동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교육받을 권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의미

가. 법률 규정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그 주체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의한 것 이어야 한다. 소속 학교의 학생이란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하고, ‘그 보호자’는 소속 학교의 학생의 보호자를 말하며, 그 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람이 해당될 수 있다.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 이어야 한다.

1) ‘교육활동 중’의 의미

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학교안전법」)과 동 시행령에서 ‘교육활동’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학교안전법」상의 ‘교육활동’ 정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앞의 2개의 항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 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나) 「교원지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실 내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생활교육, 학부모 상담 등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동료 갈등, 업무분장 갈등, 갑질 피해 등 고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교원’의 범위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국립, 공립, 사립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을 말한다.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각 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교육부고시’라고 함.)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찰결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

위

교육부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II.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근거 법령 개괄

	유형	근거 법령
1	상해 및 폭행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2	협박	
3	명예훼손, 모욕	
4	손괴	
5	성폭력 범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2호
6	불법정보유통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3호
7	공무방해 및 업무방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8	성적 언동	
9	반복적 부당간섭 행위	
10	촬영물 등 무단 배포 행위	
11	학교장 판단 유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

III. 사안 처리 흐름



IV.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설치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필수 설치

2. 구성(「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항~제3항, 제16조)

위원 정수	위원장	위원의 자격 등	임기
위원 중 선출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 순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을 확인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①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②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④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⑥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단,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년 1회 연임 (2년)가능
		위원 해촉 사유	임기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인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인원	5명	6명	7명	8명	9명
교원 위원수(1/2 초과금지)	2명 이하	3명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4명 이하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학교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교원위원 3명, 학부모·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 선출)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위원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 선출 방법) 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과 같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할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3. 위원 선임 당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능) ① 관인고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인고등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직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발생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회와 연계하여 교육활동 보호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상담전문가·의사·경찰·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함께 참석하도록 하며, 필요 시 교육청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한다.

④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사전에 수립된 ‘교권침해 판단 기준 및 예방 대책’을 기준으로 선도 등의 다양한 조치를 실시한다.

⑤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직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한다.

⑥ 쌍방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나 어느 한쪽이라도 계속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로 안건을 이송한다.

제10조(회의 소집) 위원장은 제적위원 5분의 2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회의 진행)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진행 절차를 준용한다.

제12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제13조(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 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사 등의 정족수) 위원회는 제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분쟁 관련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최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결정 등 인

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인권안전부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9조(운영경비) ①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한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②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받는다.

□부칙 <2020학년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학년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학년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학년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